

國會事務處法改正法律案

議案 番號	
----------	--

提出年月日：1984. 7. 10.
提出者：國會運營委員長

提案經緯

1984年7月9日 第122回國會(臨時會) 第2次國會運營委員會에서 國會運營制度研究小委員會에서 書面動議로 提出한 國會事務處法改正法律案을 審査한후 國會運營委員會案으로 採擇하여 提案하기로 議決하고 法制司法委員會의 體系와 字句의 審査를 받았음.

提案理由

現代社會의 發展에 따라 國家機能의 專門化·細分化는 不可避한 現狀이며 行政府는 이러한 行政需要를 뒷받침하는 機構改編을 繼續하여 왔으나 國會事務處는 지금까지 立法補助機能遂行이라는 特殊性이 充分히 反映된 機構가 組織되지 못하고 單純한 一般行政機構와 類似的한 組織으로 一貫하여 왔으며 그동안 몇차례의 一般補助組織의 改編이 있었으나 人員調整 側面의 改編에 置重, 組織相互間의 機能調整이나 效率的인 役割分擔등이 考慮된 組織改編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此際에 圖書館을 包含한 國會事務處組織을 立法府의 特殊性에 適合한 組織으로 全般的 改編을 하려는 것으로서 上位職級の

增員을 抑制하는 前提아래 事務處와 圖書館에 分散되어 있는 類似한 立法補助機能을 統合調整하여 事務處의 組織을 直接的 立法補助組織과 間接的立法補助組織으로 分類改編하되 圖書館을 事務處의 補助機能으로 吸收하여 司書業務와 電算業務를 管掌토록 하고 기타 必要한 事項을 補完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1. 事務處에 次長 2人을 두되 行政次長은 企劃豫算, 管理, 涉外, 非常計劃業務를 管掌하고, 立法次長은 議事, 立法調查, 記錄編纂業務를 管掌하며, 委員會業務를 支援調整함. (案第 5 條)
2. 圖書館長은 1級 一般職公務員 또는 1級相當 別定職公務員으로 補하며 司書業務와 電算業務를 管掌함. (案第 8 條)
3. 擔當官을 두는 範圍를 事務總長, 次長뿐만 아니라 圖書館長, 室長 또는 局長을 直接 補佐하기 위하여 擔當官을 들수 있도록 하여 擔當官 設置 範圍를 擴大 現實化함. (案第 7 條第 2 項)
4. 圖書館業務중 圖書館資料의 蒐集, 交換 기타 他 圖書館과의 關係에 있어서 圖書館長의 名義로서 事務를 處理해야 할 事項에 대하여는 事務總長이 그 權限의 一部를 委任할 수 있도록 權限 委任 根據 規定을 新設함. (案第 8 條第 3 項)

國會事務處法改正法律(案)

國會事務處法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國會事務處法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國會事務處(이하 "事務處"라 한다.)의 組織과 職務 기타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職務) 事務處는 議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國會의 會議과 運營에 관련된 事務를 處理한다.

第3條(公務員의 任用) ①事務處에 事務總長 이외에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②5級이상의 公務員은 議長이 任免하고 기타의 公務員은 事務總長이 任免한다. 다만, 規則이 定하는 바에 따라 議長은 事務總長에게, 事務總長은 行政次長에게 그 任用權의 一部를 委任할 수 있다.

第2章 事 務 處

第4條(事務總長) ①事務總長은 議長의 監督을 받아 國會의 事務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②事務總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國務委員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

第5條(次長) ①事務處에 次長 2人을 두되 立法次長·行政次長으로 하며 事務總長의 提請으로 議長이 任免한다.

②次長은 事務總長을 補佐하여 處務를 處理하며 事務總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立法次長·行政次長의 順序로 그 職務를 代理한다.

③立法次長은 議事, 立法調査, 記錄編纂등의 直接的 立法補助業務와 委員會業務를 支援調整함에 있어 事務總長을 補佐한다.

④行政次長은 企劃豫算, 管理, 涉外, 非常計劃등의 行政管理業務에 있어 事務總長을 補佐한다.

⑤次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

第6條(議長秘書室) ①議長의 秘書業務와 기타 이에 關連된 事項에 關한 業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議長秘書室을 둔다.

②議長秘書室에 秘書室長 1人을 두되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

③秘書室長은 議長의 命을 받아 室務를 管掌하며 所屬 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第7條(組織과 名稱) ①事務處의 補助機關의 名稱은 次長·圖書館長·室長·局長 및 課長으로 한다.

②事務總長, 次長·圖書館長 및 室·局長을 直接 補佐하기 위하여 그 밑에 擔當官을 둘 수 있으며 行政次長 밑에 局에 속하지 아니하는 課1個를 둘 수 있다.

③室長 및 局長은 2級 또는 3級, 課長은 4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각각 補하고, 擔當官은 2級 내지 4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2級상당 내지 4級상당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다만, 局長 또는 課長은 그 所管業務의 性質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職位에 補職되는 一般職의 職級에 상당하는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다. 이 경우 別定職國家公務員인 局長은 1人, 課長은 3人을 초과할 수 없다.

④室·局·課 및 擔當官의 種類·定員·分掌事務와 委員會에 두는 公務員의 定員 기타 필요한 事項은 規則으로 정한다.

第8條(圖書館長) ①圖書館長은 國會의 立法活動을 支援하기 위하여 圖書 其他 圖書館資料를 蒐集·整理·保存 및 圖書館奉仕를 행함에 있어 事務總長을 補佐한다.

②圖書館長은 1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1級相當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③事務總長은 規則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管事務의 一部를 圖書館長에게 委任할 수 있으며, 圖書館長은 委任받은 事項에 대하여는 圖書館長의 名義로 그 事務를 행한다.

第3章 委員會에 두는公務員

第9條(委員會의 公務員) ①委員會에 專門委員 1人과 立法審議官·立法調査官 기타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다만, 議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專門委員과 필요한 公務員을 特別委員會에 兼職勤務하게 할 수 있다.

②專門委員은 別定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補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

③立法審議官은 2級 또는 3級, 立法調査官은 4級 또는 5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각각 補한다.

④專門委員의 任用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規則으로 정한다.

第10條(專門委員의 職務) ①專門委員은 所屬委員會委員長의 指揮를 받아 議案의 審査 및 議事進行을 補佐하고 그 委員會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②立法審議官은 그 委員會의 專門委員이 事故가 있거나 委員長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專門委員의 職務를 代行한다.

第4章 補 則

第11條(法人의 設立) ①議長은 議會制度의 發展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調査·研究를 目的으로 하는 法人을 設立하게 할 수 있다.

②議長은 豫算의 範圍안에서 第1項의 法人에 대하여 出捐金を 交付할 수 있다.

第12條(諸資料의 納本) ①國家機關 또는 公共團體가 立法活動·國家政策樹立 또는 國際交換에 필요한 圖書 기타 圖書館資料를 發刊한 때에는 그 機關은 發行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刊行物을 事務處 圖書館에 納本하여야 한다.

②國家機關 및 公共團體 이외의 者가 圖書 기타 圖書館資料를 發刊한 때에는 事務總長은 이를 事務處圖書館에 納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刊行物의 發刊에 所要된 實費를 그 代金으로 支給하여야 한다.

第13條(寄贈) 事務總長은 圖書館에 物品 또는 金錢의 寄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받을 수 있다.

第14條(時差制 勤務) 事務總長은 國會의 會期中에 限하여 業務의 事情에 따라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勤務 時間을 變更하여 勤務하게 할 수 있다.

第15條(施行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規則으로 정한다.

第16條(委任規定) 國家公務員法에서 國會規則으로 정하도록 委任된 事項과 이 法에서 規則으로 정하도록 委任된 事項은 議長이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이를 정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國會事務處 및 國會圖書館의 業務와 當해 事務를 分掌하던 機構와 定員은 이 改正法律에 의한 規則이 制定·施行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國會事務處法改正法律案條文對比

現 行	改 正 案
<p>第3條(公務員의 任用) ①</p> <p>事務處에 事務總長以外에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p> <p>② 3級이상의 公務員은 議 長이 任免하고 其他의 公 務員은 事務總長이 任免한다. 다만, 規則이 定하는 바에 따라 議長은 事務總長에게, 事務總長은 <u>事務次長</u> 또는 <u>圖書館長</u>에게 그 任用權의 一部를 委任할 수 있다.</p>	<p>第3條(公務員의 任用) ①</p> <p>.....</p> <p>.....</p> <p>② 5級.....</p> <p>.....</p> <p>.....</p> <p>.....</p> <p>..... <u>行政次長</u> ..</p> <p>.....</p> <p>.....</p>
<p>第4條(事務總長) ① (省略)</p> <p>② 事務總長은 <u>別定職</u>으로 하고 報酬는 國務委員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p>	<p>第4條(事務總長) ① (現行과 같음)</p> <p>②.....<u>政務職</u>.....</p> <p>.....</p> <p>.....</p>
<p>第5條(<u>事務次長</u>) ① 事務處 에 <u>事務次長</u> 1人을 두되 事務總長의 提請으로 議長이</p>	<p>第5條(<u>次長</u>) ①.....</p> <p>... <u>次長</u> 2人을 두되 立 <u>法次長</u>· <u>行政次長</u>으로</p>

第6條(議長秘書室) ①(省略)

②議長秘書室에 秘書室長 1人을 두되 別定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

③(省略)

第7條(組織과 名稱) ①

事務處(圖書館을 除外한다)의 補助機關의 名稱은 局長 및 課長으로 한다.

②事務總長 및 事務次長을 直接 補佐하기 위하여 그 밑에 擔當官을 둘 수 있으며 事務次長 밑에 局長에 屬하지 아니하는 課 1個를 둘 수 있다.

第6條(議長秘書室) ①(現行과 같음)

②..... 政務職.....

③(現行과 같음)

第7條(組織과 名稱) ①

..... (削 除)
..... 次長,
圖書館長, 室長, 局長.....

②..... 次長, 圖書館長 및 室·局長.....

..... 行政次長 局.....

現 行	改 正 案
<p>③局長은 2級, 課長은 3級甲類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各各 補하고, 擔當官은 2級 또는 3級甲類인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p>	<p>③室長및 局長은 2級 또는 3級 4級..... 내지 4級..... 또는 2級상당 내지 4級상당..... 다만, 局長 또는 課長은 그 所管業務의 性質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職位에 補職되는 一般職의 職級에 相當하는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다. 이 경우 別定職國家公務員인 局長은 1人, 課長은 3人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局·課 및 擔當官의 種類·定員·分擔事務와 委員會에 두는 公務員의 定員</p>	<p>④室·局..... </p>

其他 필요한 事項은 規則
으로 定한다.

第8條 (委員會의 公務員)

①委員會에 專門委員 1人
과 立法審議官·立法調査官
其他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專門委員과 필요한
公務員을 特別委員會에 兼
職 勤務하게 할 수 있다.

②專門委員은 別定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補의 報
酬와 同額으로 한다.

③立法審議官은 2級, 立法
調査官은 3級인 一般職國
家公務員으로 各各 補한다.

④專門委員의 任用資格 其
他 필요한 事項은 規則으
로 定한다.

第9條 (專門委員의 職務)

①專門委員은 所屬委員會委

第9條 (委員會의 公務員)

①.....

②.....

③..... 2級 또는
3級..... 4級 또는 5級

④.....

第10條 (專門委員의 職務)

①.....

現 行	改 正 案
<p>員長의 指揮를 받아 議案의 審査 및 議事進行을 補助하고, 그 委員會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p> <p>②立法審議官은 그 委員會의 專門委員이 事故가 있거나 委員長이 특히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專門委員의 職務를 代行한다.</p>	<p>.....</p> <p>.....</p> <p>補佐.....</p> <p>.....</p> <p>②.....</p> <p>.....</p> <p>.....</p> <p>.....</p> <p>.....</p>
<p>第10條(資料要請) 專門委員은 그 職務遂行上 必要할 경우에는 圖書館長에게 資料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p>	<p>第8條(圖書館長) ①圖書館長은 國會의 立法活動을 支援하기 위하여 圖書其他 圖書館資料를 蒐集·整理·保存 및 圖書館奉仕를 行함에 있어 事務總長을 補佐한다.</p> <p>②圖書館長은 1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1級相當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p>

③事務總長은 規則이 定하
는 바에 의하여 그 所管
事務의 一部를 圖書館長에
게 委任할 수 있으며, 圖
書館長은 委任받은 事項에
대하여는 圖書館長의 名義로
그 事務를 行한다.

第4章 圖書館

第11條 (任務) 圖書館은
國會의 立法活動을 支援
하기 위하여 圖書 其他
立法資料를 議員 및 專
門委員에게 提供함과 同
시에 圖書 其他 圖書館
資料를 蒐集·整理·保存
하며 圖書館奉仕를 行함
을 그 任務로 한다.

第12條 (圖書館長) ①圖書
館에 圖書館長 1人을
두되 事務總長의 提請으
로 議長이 任免한다.

第4章 補則

(削 除)

(削 除)

現 行	改 正 案
<p>②圖書館長은 事務總長의 監督을 받아 圖書館業務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p> <p>③圖書館長은 別定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p>	
<p>第13條 (組織과 名稱)</p>	<p>(削 除)</p>
<p>①圖書館의 補助機關의 名稱은 局長 및 課長으로 한다.</p> <p>②圖書館長을 直接 補佐하기 위하여 그 밑에 擔當官을 둘 수 있으며 圖書館長밑에 局長에 屬하지 아니하는 課 1個를 둘 수 있다.</p> <p>③局長은 2級, 課長은 3級甲類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各各 補하고,</p>	

擔當官은 2級乙類 또는 3級甲類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④局·課 및 擔當官의 種類·定員·分擔事務 其他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한다.

第14條 (諸資料의 納本) ①

國家機關 또는 公共團體가 立法活動·國家政策樹立 또는 國際交換에 필요한 圖書 기타 圖書館資料를 發刊한 때에는 그 機關은 發行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刊行物을 圖書館에 納本하여야 한다.

②國家機關 및 公共團體이 외의 者가 圖書 기타 圖書館資料를 發刊한 때에는 圖書館長은 이를 圖書館에 納本하게 할수

第12條 (諸資料의 納本)

①.....
.....
.....
.....
.....
.....
.....

事務處 圖書館.....

②.....
.....
.....

... 事務總長 事

務處圖書館

現 行	改 正 案
<p>있다. 이경우에 <u>圖書館</u> <u>長은</u> 당해 <u>出版物의</u> <u>發</u> <u>刊에</u> <u>所要된</u> <u>費用에</u> <u>상</u> <u>당한</u> <u>金額을</u> <u>그</u> <u>代金으</u> <u>로</u> <u>支給한다.</u></p>	<p>..... (削 除) <u>刊行物</u> <u>實費를</u> <u>支給하여야</u> <u>한다.</u></p>
<p>第 15 條 (寄贈) <u>圖書館長은</u> <u>物品 또는 金錢의</u> <u>寄贈이</u> <u>있을 때에는</u> <u>事務總長의</u> <u>承認을</u> <u>얻어</u> <u>이를</u> <u>받을수</u> <u>있다.</u></p>	<p>第 13 條 (寄贈) <u>事務總長은</u> <u>圖書館에</u> <u>物品 또는 金錢의</u> <u>寄贈이</u> <u>있을 때에는</u> <u>이를</u> <u>받을 수</u> <u>있다.</u></p>
<p>第 16 條 (法人의 設立) (省略)</p>	<p>第 11 條 (法人의 設立) (現行과 같음)</p>
<p>第 17 條 (時差制勤務) (省略)</p>	<p>第 14 條 (時差制勤務) (現行과 같음)</p>
<p>第 18 條 (委任規定) <u>國家公</u> <u>務員法에서</u> <u>國會規則으로</u> <u>정하도록</u> <u>委任된</u> <u>事項과</u> <u>이</u> <u>法에서</u> <u>規則으로</u> <u>정하</u> <u>도록</u> <u>委任된</u> <u>事項</u> <u>및</u> <u>이</u> <u>法</u> <u>施行에</u> <u>관하여</u> <u>필요한</u> <u>事項은</u> <u>議長이</u> <u>國會運營委</u></p>	<p>第 15 條 (施行規則) <u>이</u> <u>法</u> <u>施行에</u> <u>관하여</u> <u>필요한</u> <u>事</u> <u>項은</u> <u>規則으로</u> <u>정한다.</u> 第 16 條 (委任規定) <u>國家公務</u> <u>員法에서</u> <u>國會規則으로</u> <u>정하</u> <u>도록</u> <u>委任된</u> <u>事項과</u> <u>이</u> <u>法</u> <u>에서</u> <u>規則으로</u> <u>정하도록</u> <u>委</u></p>

員會의 同意를 얻어 이를
정한다.

任된 事項은 議長이 國會運
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이
를 정한다.

공백